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 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,

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단서 중 “조종사”를 “조종사 및 정비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,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”을 “최종시험예정일”로 한다.

제28조제5항 중 “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”로, “요구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·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요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순번 1의 비고란 중 “종합병원장 발행”을 “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계급	국가·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	경찰공무원	군인	교육공무원			공공기관
				초·중·고등학교 교원	전문대학 교원	4년제대학 교원	

별표 6 비고 제2호 중 “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”를 “최종시험

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”으로 하고, 같은 비고 제3호 중 “면접시험일”을 “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은 2028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영	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	-		
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	-----			
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	-----			
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	-----			
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에	-----			
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	-----			
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	-----			
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	-----			
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	-----			
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	-----			
항공 분야 <u>조종사</u> 의 경력을 산	-----			
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	-----			
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	-----			
산정한다.	-----			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	
④ · ⑤ 삭제				
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	⑥-----			
시하고자 하는 자는 <u>공개경쟁시</u>	-----			
<u>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,</u>	-----			
<u>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</u>	-----			
<u>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</u>	-----			
<u>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</u>	-----			
<u>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영</u>	-----			
<u>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</u>	-----			

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. ⑦ ~ ⑩ (생략) 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~ ④ (생략) ⑤ 시험실시권자는 <u>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·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	----- -----. ⑦ ~ ⑩ (현행과 같음) 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구할 수 있다.</u>
--	---